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51
----------	-----

2020. 10. 23.(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나. 발 의 자 : 윤남진 의원 등 7인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 10월 14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남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따라 중앙의 기본계획과 지방의 시행계획을 연계하고, 소비생활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사업자의 책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등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규정 신설
-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등 전반적인 조례의 체계·내용 개선

나. 주요내용

-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도와 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15조)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안 제16조 ~ 안 제17조)

- 소비자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 해결 규정(안 제18조 ~ 안 제24조)
-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안 제25조 ~ 안 제26조)
-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규정 (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

가. 제출배경

- 「소비자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에 소비생활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계량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과 규격의 적정화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취약계층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 안 제16조, 안 제17조는 중앙정부의 다음 연도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한 전담기구인 소비자생활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처리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 센터개소 : 2003. 8. 20. • 근무인원 : 2명(일반임기제 1명,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견 1명)
- 주요기능 : 상담·피해구제처리, 분쟁조정 중재,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 및 감시 등
- 추진실적

연도별	상담 접수 및 처리실적(건)						월평균
	계	비율	상담정보 제공	비율	피해 구제	비율	
2018년	8,587	100%	6,909	80.5%	1,678	19.5%	716
2019년	7,716	100%	6,304	81.7%	1,412	18.3%	643
2020년 상반기	3,054	100%	2,504	82.0%	550	18.0%	509

- 안 제25조, 안 제26조에서는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음
- 안 제27조는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소비자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소비자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도민생활의 안정대책 등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다수의 규정들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한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 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할 때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권리를 향유 시 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2.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 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비생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5.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익증진

제6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거래의 적정화) 도지사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할부판매·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 교육)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능력을 높이며,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상시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활용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전문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및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및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급격한 가격폭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취약계층의 보호) 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도지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소비자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 해결

제1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업무 전담기구로써 충청북도 소비자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상담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
2. 소비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및 조사·연구
4.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5. 소비자 종합정보망 운영·관리
6. 소비자 관련 제도·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에 관한 조직·전담인력·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신청) 소비자는 센터 또는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서신, 방문 등에 의하여 피해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피해구제처리) 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받은 센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사안 중 당사자 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3조(소비자피해구제처리의 종결) 센터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합의·권고로써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타 소비자업무 기구와의 협력)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처리 및 소비자능력 향상을 위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지원

제25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의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관한 조사·분석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5.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제26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등록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7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시책에 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생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생활센터는 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소비자생활센터로 본다.

관계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및 위해방지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시행계획(이하 "시·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6. 3. 29.>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 및 시·도별시행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는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②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②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물품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0. 31., 2008. 1. 31., 2008. 2. 29., 2013. 3. 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포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최고가격은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최고가격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